##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8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안상훈·이성권·박성훈

백종헌 • 권영세 • 서일준

박성민 · 최보윤 · 김성원

고동진 · 이인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고용·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교육·고용·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조기진단 및 개입, 양육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
-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 선지능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 및 고용촉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경계선지능정책의 총괄·조정) 경계선지능인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

법

-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 평가
- 4.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서비스

- 제9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진단 결과를 경계선지능인 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대상, 정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양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 형성 및 관리, 자립에 필요한 경제·법률·문화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형성 및 관리, 자립에 필요한 경제·법률·문화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 련,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생활 훈련,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 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대상, 정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활용할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8조(비밀유지 의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규정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